

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1996· 3· 1 규칙 제 41호
일부개정 2018· 11· 16 규칙 제637호
일부개정 2020· 8· 6 규칙 제68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· 8· 6>

② 삭제 <2020· 8· 6>

제3조 삭제 <2020· 8· 6>

제4조 삭제 <2020· 8· 6>

제5조 삭제 <2018· 11· 16>

제6조(과태료 처분대장)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(별지 제2호서식)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 11· 16 규칙 제6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 8· 6 규칙 제68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
(제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 정 방 법	과 태 료
도로무단점용 면 적 별	1. 3.3㎡ 이하	100,000원
	2. 3.3㎡ 초과 ~ 6.6㎡ 이하	150,000원
	3. 6.6㎡ 초과	200,000원
	4. 도로의 훼손, 통행저해요인 심각, 고질적 적치행위 등은 제1~3항에서 정한 점용면 적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 부과	200,000원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			제 호 영수필 통지서			제 호 영 수 증		
납부의무자	성명		납부의무자	성명		납부의무자	성명	
	주소			주소			주소	
	상호			상호			상호	
위반 사항			위반 사항			위반 사항		
과태료 금액	납기내	원	과태료 금액	납기내	원	과태료 금액	납기내	원
	납기후	원		납기후	원		납기후	원
위 과태료는 「도로법」 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「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.			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년	월	일	년	월	일	년	월	일
이	천	시	장	이	천	시	금	고
귀하			귀하			귀하		

[별지 제2호서식]

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·징수 대장

일련 번호	위 반 자		위 반 내 용		과태료 결정 및 통지		과태 부과 금액	납부 기한		납부금액		비 고
	주소 (상호)	성명	위반행위의 종별(장소)	점용면적 (㎡)	결정 일자	통지 일자		당초	독촉	납부 일자	금액	